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전사자와 순직자 등의 추서진급제도는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이지만,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연금 등 각종 급여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추서진급한 경우에도 진급한 것으로

보아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하도록 개정(안 제11조 제4항)

1) 진급,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순직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기준소득월액에 증가분을 반영하고 있음

2)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추서진급의 경우 봉급이 증가하지 않아 추서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어, 봉급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기준소득월액에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봉급월액이증가한”을 “봉급월액이증가(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진급의 경우에도 봉급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)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진급, 보직변경 등으로 <u>봉급 월액이증가한</u> 후 해당 연도에 상이연금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 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「군인연 금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 한 금액으로 하고, 순직유족연 금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.	제11조(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봉급</u> <u>월액이증가(군인사법 제30조 제</u> <u>1항에 따른 진급의 경우에도 봉</u> <u>급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)</u> <u>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	
연 락 처	(02) 748 - 6674